

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(서면회의)

1. 일 자 : 2009. 7. 27.(월)

2. 참석위원 : 최 시 중 위 원 장
송 도 균 부위원장
이 경 자 위 원
이 병 기 위 원
형 태 근 위 원 (5인)

3. 불참위원 : 없 음

4. 회의내용

가. 서면 의결 사유

-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'09.6.9 공포, 9.10 시행)안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함.

나. 의결 사항

1)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(제2009-33(서)-158호)

-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9782호, 2009. 6. 9. 공포)에 따라 인터넷 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 등이 포함된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 안에 대한 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내용

- (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) 기존 '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' 산하에 '실무위원회' 상설 설치·운영하였으나 역할 중복 등 실효성이 적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경우 보완이 가능하므로 '실무위원회' 설치규정 삭제(안 제6조)
- (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 개선) 피신청인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분쟁조정심리를 진행토록 개선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, 조정절차, 답변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등을 규정(안 제15조, 제15조의2)

- (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규정)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(안 제20조, 별표 1)

< 과태료 부과기준 (안) >

위 반 행 위	근거 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	법 제27조 제1항제1호	300	700	1000
법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27조 제1항제2호	300	500	1000